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12. 29.(수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강철윤, 사무관 이혜인, 주무관 박선주 • ☎ (044) 201-4848, 4596 	
	철도안전정책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정채교, 사무관 박태현, 주무관 임연우 • ☎ (044) 201-4603, 4605 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3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중대시민재해, 이렇게 예방하세요

- 국토부,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 관련 재해예방 해설서 배포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중대재해처벌법”)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*(12.30)한다.

*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, 정책자료→정책정보)에서 확인 가능

○ '21.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·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,

- '20.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, 가슴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.

○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,

-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·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*(공중이용시설·공중교통수단) 해설서를 준비해왔다.

< 중대시민재해 유형별 주관부처 >

구 분	원료·제조물 (승 제8조제8호)	공중이용시설			공중교통수단 (法 제2조제5호)
		실내공기질법 (승 제3조제1호)	시설물안전법 (승 제3조제2호)	다중이용업소법 (승 제3조제3호)	
주관부처	환경부	환경부	국토부	소방청	국토부

□ 국토부가 배포한 **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**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

- 먼저, **중대재해처벌법**의 적용대상과 시기, 경영책임자의 범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**법령 일반사항**을 설명하였다.
- 다음으로,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·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·예산 확보, 안전점검 등 주요 **의무사항**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세부 대상별 **안전·보건 관계 법령**을 예시하였다.
 - 특히, **안전계획 표준(안),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**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**법령 상 의무사항**을 **원활히 준수**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
- 또한 도로·철도·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,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**구체적 실천 방안과 사례**를 제시하여 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.

□ 아울러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·수탁관계*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역사·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**내년 2월까지** 보다 구체화된 **매뉴얼과 로드맵**을 제시할 계획이다.

* (예시) 철도시설 유지보수 : 국토부 - 철도공단(국가 대행) - 철도공사(수탁)
SR 고속철도차량(일부) : 철도공사(소유/임대/정비) - SR(임차/운영)

- 특히, 매뉴얼의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 과거에 발생했던 **철도사고**를 중심으로 **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여부**에 대한 **해석례**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또한 전국 철도운영기관의 **질의사항**에 대한 **법리적 답변**을 제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**철도현장에 안착**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- 현행 **철도안전 제도**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**분석·점검**한 결과와 그에 대한 **제도 정비방안**을 함께 제시하여 **철도 분야 중대재해 예방**을 위한 **로드맵**을 구축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“산하기관·지자체 설명회, 노사간담회*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예정”이라면서,

* 관계기관 TF회의(14회), 지자체·민간 대상 설명회(10회), 노사간담회(3회) 등 총 27회 실시

○ 아울러, “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, 업체와 기관에서는 해설서를 참고하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해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이해인 사무관 또는 박태현 사무관(☎ 044-201-4848, 46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